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5. 11. 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8. 18. 구자근의원 등 11인

나. 회부일자: 2025. 8. 19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5. 11. 17.) 상정 · 제안설
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부

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5. 11. 18.) 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원
안가결)

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5. 11. 21.) 상정 · 소위심
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구자근의원)

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 실

시,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 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성소미)

개정안은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‘빈 점포의 수, 위치,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고(안 제8조제2항제4호 신설),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등이 고객안내시설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(안 제30조의2 신설).

개정안에 따라,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활성화구역의 지

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때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면 효과적인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그리고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등이 청년상인이나 지역주민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활성화구역의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,

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입법례, 농어촌의 빈집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김원이 위원)

활성화구역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고객안내시설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였음.

6. 심사결과

원안 가결

7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내용

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음.

※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빈 점포의 수, 위치,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빈 점포의 활용 촉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(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·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
2. 고객안내시설,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
3.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
4.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

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실태조사) ① (생략)	제8조(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4. <u>빈 점포의 수, 위치,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</u>
4. (생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제30조의2(빈 점포의 활용 촉진)</u>
	<u>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(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</u>
	<u>1.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·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</u>
	<u>2. 고객안내시설, 편의시설 또</u>

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

3.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
창업보육장소

4.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
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
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
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
장소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
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이
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
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
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
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
다.